

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(김남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44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1. 20.

발 의 자 : 김남희 · 이주희 · 양부남
이수진 · 임오경 · 강준현
박희승 · 전용기 · 전진숙
박민규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성평등 교육, 문화조성 등 다양한 성평등정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여 내실있는 성평등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음.

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성평등센터로 지정하여 성평등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평등정책을 내실있게 수행하려는 것임(안 제46조의3부터 제46조의5까지 신설 등).

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양성평등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6조의3부터 제46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6조의3(중앙성평등센터의 지정 등)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성평등 실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중앙성평등센터(이하 “중앙센터”라 한다)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성평등 교육에 관한 조사 및 연구
2. 성평등 문화조성 사업 매뉴얼 개발 및 보급
3. 성평등 전문인력 양성 지원
4. 성평등정책 관련 기관·단체 간 협력망 구축 및 운영
5.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중앙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 중앙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6조의4(지역성평등센터의 지정 등)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에서 성평등 실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성평등센터(이하 “지역센터”라 한다)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성평등 교육 및 컨설팅 지원
2. 성평등 문화조성 사업 운영 지원
3. 지역 내 성평등정책 관련 기관·단체 간 협력망 구축·운영
4.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 지역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6조의5(중앙센터 및 지역센터의 지정취소 등)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(지역센터에 한정한다)은 중앙센터 또는 지역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지정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2.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

3. 제46조의3제3항 또는 제46조의4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
4. 시정명령을 시정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
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6조의5에 따라 중앙센터 또는 지역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46조의3(중앙성평등센터의 지</u> <u>정 등)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</u> <u>성평등 실현에 필요한 다음 각</u> <u>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</u> <u>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</u> <u>춘 기관 또는 단체를 중앙성평</u> <u>등센터(이하 “중앙센터”라 한</u> <u>다)로 지정할 수 있다.</u> <u>1. 성평등 교육에 관한 조사 및</u> <u>연구</u> <u>2. 성평등 문화조성 사업 매뉴</u> <u>얼 개발 및 보급</u> <u>3. 성평등 전문인력 양성 지원</u> <u>4. 성평등정책 관련 기관·단체</u> <u>간 협력망 구축 및 운영</u> <u>5.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</u> <u>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</u> <u>다고 인정하는 사업</u> <u>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</u> <u>에 따라 지정한 중앙센터에 대</u> <u>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</u> <u>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</u> <u>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</u>

<신 설>

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 중앙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6조의4(지역성평등센터의 지

정 등)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에서 성평등 실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성평등센터(이하 “지역센터”라 한다)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성평등 교육 및 컨설팅 지원
2. 성평등 문화조성 사업 운영 지원

3. 지역 내 성평등정책 관련 기관·단체 간 협력망 구축·운영

4.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역센터에 대하여 예

<신 설>

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 지역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6조의5(중앙센터 및 지역센터의 지정취소 등)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(지역센터에 한정한다)은 중앙센터 또는 지역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2.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
3. 제46조의3제3항 또는 제46조의4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
제49조(청문) <신 설> (생 략)	<u>4. 시정명령을 시정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</u> <u>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 제49조(청문) ① <u>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6조의5에 따라 중앙센터 또는 지역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</u> <u>②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</u>
--	--